

현안분석 2012-01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현대호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2-01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현 대 호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and Agenda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
Hyeon, Dae-Ho

2012. 8. 14.

요 약 문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로 조성하는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 감정인에게 손해배상 감정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개념정의를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실판단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보안인증제도 및 산업보안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기술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기구(보호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내지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주제어 : 산업기술, 영업비밀, 부정사용, 손해배상, 설명의무, 명시 의무, 리스테이터먼트

Abstrac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visions regarding certain types of industrial technology as trade secrets set forth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erms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nd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major legislative matters in relation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may be necessary to reinforce the obligation to submit evidence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circumstance in which too much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evidence of the theft of trade secrets. Secondly, where an alleged theft is denied with regard to a product or method created by an act infringing on trade secrets, the obligation to specify the product or method without committing the theft may be imposed. Thirdly, in assessing damages caused by the theft of trade secrets, expert witnesses shall be obliged to explain necessary matters to assess such damages. Fourth,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Fifth, it may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s so that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to be protected in the criminal proceedings for trade secrets theft cases.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major legislative matters in relation to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 may specify industrial

technologies by changing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Secondly,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func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prescribe in the Act may be amended so that those committees can make a judgement the facts regar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irdly,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n industrial security certification program and vocational qualifications into industrial security field. Fourth, It may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protection and support center) to support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ies. Fifth, it may be considered either to promote active dispute resolution practices by a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or to discontinue the organization.

➤ **Key Word : Industrial Technology,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laim for Damage, Oblig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 of Clear Statement, Restatemen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10
제 2 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화 방안	13
제 1 절 개 관	13
제 2 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13
I. 현 황	13
II. 개선방안	14
제 3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15
I. 현 황	15
II. 개선방안	16
제 3 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17
제 1 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17
I.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과	17
II. 헌법재판소의 형사벌에 관한 결정과 문제점	21
III. 최근 정부의 입법안과 주요 내용	23

제 2 절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방안	26
I. 현 황	26
II. 개선방안	27
제 4 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39
제 1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39
I.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39
II. 종전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42
III. 2011년의 개정경과 및 주요 내용	44
IV. 시사점	49
제 2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50
I. 산업기술	50
II. 전문위원회	53
III. 산업보안인증 및 자격제도	54
IV. 산업기술 보호지원	59
V. 형사벌	61
VI.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63
VII. 전직금지	65
제 5 장 결 론	67
참 고 문 헌	69
[부 록]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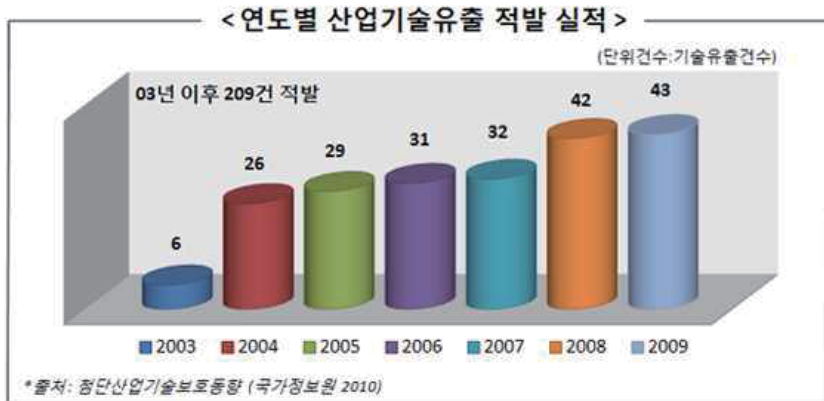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GDP가 세계 12위 수준이며, 산업별로는 조선 1위를 비롯하여 자동차·반도체·IT·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특히 현황 및 IT발전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P, 2004년)의 기술 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미국,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기술주도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¹⁾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첨단산업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을 빼내가기 위한 산업스파이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까지도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어 기업 및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첨단산업기술의 유출은 2003년~2009년까지 해외로 불법유출을 기도한 총 209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1) 국가정보원, 산업스파이 사례연구, 2007., 15면.

2)



한편, 산업기술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한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의 형사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³⁾ 산업기술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의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보호되었고 점차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의 행정규제(예컨대, 신고·승인, 과태료 등)를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기술 보호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특성과 맞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정부규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새로운 산업기술의 개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신하거나 또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반조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입법사항의 체계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18대 국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가 있으며, 올해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이 문제되어 그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2011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문제되어 온 입법사항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수용하였지만,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기반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부정경쟁

3)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박영사, 2011., 121-129면 참조.

방지법은 영업비밀에 관련한 사항만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되, 2012년에 개정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입법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여 양법의 적용상 중복성의 논란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화 방안을, 제3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4장에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을, 그리고 제5장에서는 입법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제 2 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화 방안

제 1 절 개 관

위에서 지적했듯이 산업기술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비롯하여 각종의 형사법령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고, 이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 중첩 내지는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도 나름대로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이렇다 보니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간에 법체계상 어느 법률에서 규율해야 하는 대상인지(예컨대, 금지청구 또는 형사처벌 등)가 모호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가칭)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I. 현 황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별개의 독립된 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외국입법을 분석하면, 미국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세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비록 법

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커먼로상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법전의 형식을 빌려서 체계화 한 것이므로 입법의 체계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주법의 통일을 위한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은 단행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단일법을 통하여 영업비밀은 물론 다른 부정경쟁행위도 함께 규율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율하여 포괄적인 입법방식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한적(내지는 열거적)인 방식으로 부정경쟁을 규율하고 있지만, 입법체계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명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법은 하나의 법률에서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상호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II. 개선방안

독일이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나의 실질적인 통합법률로 양자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형식상 하나의 법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분하는 법체계(예컨대, 장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만을 별도로 규율하여 단행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의 상호 중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관한 보호도 이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칭)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관한 입법사항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금지청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화 방안은 이미 우리 나라의 법현실과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와 개선

I. 현 황

우리 나라에서 산업기술 보호는 종래까지 영업비밀 형태를 가진 것에 한정하여 주로 보호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물론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산업기술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즉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공통된 규율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 법률의 적용상 상호 중첩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즉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있어서 상호 부조화되거나 상이한 내용의 입법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서 실무상 어느 법령에 따라 보호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⁴⁾

4) 미국은 2007년 7월에 「엑슨-플로리오 법(Exon-Florio Act)」을 개정한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을 제정하였다.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은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상의 ‘외국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조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도 자국의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캐나다, 독일 등은 미국의 외국투자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See George Stephanov Georgiev, The Reformed CFIUS Regulatory Framework : Mediating Between Continued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25 Yale J. on Reg. 125, 130-31 (2008)).

II. 개선방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의2의 금지청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금지청구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데, 과연 양자를 달리하여 입법할 사항인지 의문이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의 산업기술침해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는 양법의 연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미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상호 중첩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금지청구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제 3 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 1 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I.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경과

1. 1961년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 그 제정이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주요내용은 첫째,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2. 1998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8년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중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기업의 현직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그 형량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3. 2001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1년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주된 개정사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가 그 물건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구술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04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4년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주요개정 사항은 첫째,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2011년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11년 12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⁵⁾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5) 현재 국회에서는 김영록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 2. 2.)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제안이유로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미 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도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성급한 법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 삭제)”이라고 밝히고 있다.

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안 제14조의4 제1항).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의4 제1항).

6.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비밀의 보호는 1994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서 처음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독자적인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 2001년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2004년 개정에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민사적 보호와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늘어났고 그 피해액도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민사구제와 형사처벌이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 보호에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구제와 형사구제는 법체계상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기술의 비밀성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II. 헌법재판소의 형사벌에 관한 결정과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2011.11.24. 2010헌가42)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같은 이득범죄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부당한 부를 추구하고자 함에 있고,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 이득액이 상당히 고액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과 같은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행위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다. 행위와 관련된 이익이 커질수록 행위자는 이익을 보유하는 대가로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단지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하다는 단순한 비교방법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재산상 이득액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부과만 가능하지만,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위와 관련된 이득액이 클 경우 벌금형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병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행위자보다 명백히 중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양형으로 불

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구체적인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와 재산상 이득액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이는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시정하면 된다”고 보았다. 즉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따르면, 해당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형의 상한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선택형으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41조 제2호, 제6호 및 제50조 제1항이 징역형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반면 벌금형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형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양 범죄의 징역형의 상한이 동일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 보다 가벼운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택형인 벌금형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은 범죄행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반면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불법의 정도 또한 심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범죄행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은 행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선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은 입법형식상 위헌성이 있지만, 적용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면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낮은 형사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의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2항은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실무상으로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검사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고,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본래 형사벌의 기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Ⅲ. 최근 정부의 입법안과 주요 내용

1. 2011년 12월 23일 정부발의 개정안 및 주요 내용

2011.12.23. 정부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제안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電子指紋)을 이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하였다. 즉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

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하였다.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하였다.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셋째,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안 제18조)하였다. 기업 외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공동연구 및 자체 수익활동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하였다.

2. 2012년 정부의 입법예고와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취지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1호차목)하였다. 즉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향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하였다. 즉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電子指紋)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벌칙 규정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및 법정형 체계를 개선(안 제18조)하였다. 즉 기업 외에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벌칙 규정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하였고, 현행 벌칙 규정은 재산상 이득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이 오직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절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방안

I. 현 황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을 특정하고 있어서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송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명시의무에 대한 신설, 자료의 제출의무의 보완 등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다.

셋째, 소송상에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감정하는 데에 필요한 감정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신설이 문제된다.

넷째, 영업비밀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즉, 법익의 보호와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문제된다. 미국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반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에까지 널리 도입되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차원 내지는 침해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손해배상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침해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민사소송절차에서 도입되어 있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명령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문제된다.

II.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일이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하여 적용범위(적용대상)가 협소하다.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및광고등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한 부정확한 표시행위와 허위사실의 고지나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정부발의 부정경쟁방지법안 제2조 제1호 차목(“그 밖에 경쟁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의 신설이 주목된다.

2. 자료의 제출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은 서류제출의 책임만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미국의 증거개시절차와 유사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형평을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⁶⁾ 예컨대,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있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배경으로 영업비밀의 유효성·침해성이 인정되는 이상, 침해자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영업비밀보유자의 지위를 적절하게 입증하는 한도에서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상태를 금전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인정되는데,⁷⁾ 증거개시절차에서는 상대방당사자에 대하여 질문 및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증언녹취를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증언녹취에 관계된 문서 등 증거를 지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6조제1항에서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 단서에

6)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 그 제도적 기반은 증거개시절차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는 증거를 강제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미국은 1982년에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진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창설된 이래 특허권의 보호에 중요한 판례가 집적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입증에 요구되는 수준을 완화하고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의 산정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이전에 비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7) 尾崎英男, 米國特許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 知的所有權おめぐる損害賠償の實務(知的所有權おめぐる損害賠償の實務(NBL no.33)), 商事法務研究會, 1996., 128-129頁.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전2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 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또는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료의 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제출된 서류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p>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u>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검증 목적의 제출에 준용한다.</u>

3. 명시의무의 신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은 무형적인 비밀정보이므로 침해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침해와 관련된 증거 등이 모두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영업비밀보유자가 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편중현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의무보다 강한 제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5조의2에서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부정경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할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명히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신 설>	제14조의4(구체적 모습의 명시의무) <u>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모습을 부인할 때에는 상대방당사자는 자</u>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u>기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명히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설명의무의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민사사건과 달리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하여 손해액을 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확정은 당사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법원이 정하는데,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정인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정을 명할 때에는 당사자는 선정인에게 당해 감정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이 조항을 편입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신 설>	<u>제14조의6(손해산정을 위한 감정)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해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산정을 위하여 필요한</u>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u>사항에 대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당해 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u></p>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종래까지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적인 차원에서 운용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손해액을 벗어나 침해자의 주관적 요소(고의 또는 중과실)에 착안하여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보다 가중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침해자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피해액과는 별개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공정행위 등과 같이 경제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법익의 보호와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도 유사한 상황에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라는 민사법으로서의 역할이외에 사회질서의 유지에 대한 역할도 부담한다. 따라서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목적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의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⁸⁾

〈예 시〉

현 행(법 른)	개선안(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 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① <좌동> ② <u>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즉 동법 제35조제2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의 신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4조의4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민사소송절차에서 유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데, 형사 사건에서도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2년에 영업비밀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 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업비밀의 은닉결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법원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혹은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3조제1항). 이 경우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해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법원은 이런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 검찰관 또는 피고인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기타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가결하고 또한 해당사항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지게 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

고인 기타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 법원은 은닉결정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으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은닉결정(秘匿決定))에 의해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게 되는 사항을 말한다)에 관련된 명칭 기타 표현을 대체할 호칭 기타 표현을 정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법원은 은닉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 또는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에 의해 벌칙조문이 철회 혹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은닉결정(秘匿決定)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은닉결정(秘匿決定)에 관련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동조 제5항).

둘째, 기소장의 낭독방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즉 은닉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4조).

셋째, 심문 등의 제한을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은닉결정(秘匿決定)이 있을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하는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이르는 때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인 피고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제1항). 이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준

용된다(동조 제2항).

넷째, 공판기일 외의 증인심문 등을 신설하였다. 법원은 은닉결정(秘匿決定)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혹은 번역인을 심문할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공술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혹은 번역인의 심문 혹은 공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술을 요구하는 행위 혹은 피고인의 공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이르고 이것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해자, 피고인 기타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

다섯째, 심문 등에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명의 제시명령을 신설하였다. 법원은 호칭 등의 결정을 하거나 심문 혹은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취지를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 할 심문 혹은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7조).

여섯째, 증거서류 낭독방법의 특례를 신설하였다. 은닉결정(秘匿決定)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8조).

일곱째, 공판전 정리절차 등에서의 결정을 신설하였다. ① 은닉결정(秘匿決定) 혹은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과 ② 심문 또는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취지를 정할 것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

차에서 할 수 있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9조).

여덟째, 증거개시 시의 영업비밀 은닉(秘匿) 요청을 신설하였다.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게 되는 사항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해자, 피고인 기타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고하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혹은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정하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30조제1항).

아홉째, 최고재판소 규칙으로의 위임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31조).

제 4 장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 1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 경과 및 주요 쟁점

I.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최근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과학·산업 기술인 및 연구개발자를 보호지원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하였다. 즉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하였다. 즉 국무총리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호지침을 제정·보급(안 제8조)하였다. 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침으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안 제9조)을 하였다. 즉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을 얻도록 하였다. 즉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신고 등(안 제1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하도록 하였다.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승인대상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매각·기

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안 제14조 및 제15조)를 부과하였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23조)하였다. 즉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비밀유지의무 등(안 제34조 및 제36조제5항)을 신설하였다. 즉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지정·사전검토·조사·접수·상담·연구개발 및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열 번째,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안 제36조 및 제37조)을 신설하였다. 즉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 해외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II. 종전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2008년 3월 14일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008년 개정의 이유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초 차세대 인터넷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 원천기술과 자동차생산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출 방법 또한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미흡한 형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즉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2008년 12월 26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이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

별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3. 2009년 1월 30일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이달근의원 대표발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에서는 2가지의 입법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0조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처분 절차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요건이 일반화되고 부과·징수, 재판 등의 과태료 처분 절차가 통일된 것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에서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산지출에 관한 것으로 일정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다른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Ⅲ. 2011년의 개정경과 및 주요 내용

1.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

2011년 박근혜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종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어 온 입법사항에 대하여 망라하고 있다. 즉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그간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법은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곤란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 범위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즉 현행 법률상 산업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대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법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지정·고시·공고한 기술로 한정(각목 내용은 삭제)하여 산업기술 정의의 불명확성 해소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시 지정·고시·공고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실무상 문제된 논의를 포함시켰다.⁹⁾

9) 정부는 2007년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08년~2012년), 산업기술 보호

둘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하는 것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기본계획을 매 5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정도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 조정(안 제7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범위가 중첩적이어서 비효율성이 문제되어 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중요 안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일반사안은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안 제11조의2 신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다. 즉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지침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중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전기·전자분야 4개 기술, 자동차분야 8개 기술, 철강분야 6개 기술, 조선분야 7개 기술, 원자력분야 4개 기술, 정보통신분야 6개 기술, 우주분야 5개 기술 등 총 40개 기술을 분야별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9년 12월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전자·조선분야 기준변경과 정보통신분야 추가지정 및 생명공학분야 신규지정 등 8개 분야 총 49개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을 재조정 한 이후, 지난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3호에 의거하여 자동차분야 고속열차 제어방식 일부 변경과 정보통신분야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1개를 추가 지정하여 8개 분야 총 50개 기술로 확정하였다. 2012년 1월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호에서는 총 58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 해외투자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되 해당 해외인수·합병 등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인수·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다섯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안 제14조의2 신설)을 신설하였다. 즉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

10) 2007년 박근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박근혜의원 대표발의가 있었다. 즉 이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의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쟁업체들이 인력스카웃, 위장합작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국내기업이나 연구소의 첨단기술과 경영전략의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해마다 속출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피해액이 수 조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크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방지·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첫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둘째, 국가핵심기술의 보유·관리기관의 해외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6항).

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안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도입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보안전문가 양성 및 자율적인 산업기술보호 기반을 구축하였다.

2.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업의 요청이 없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특정 기업의 재산권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금지행위는 기술 해외 유출의 예비 단계 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은 행위 유형들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3. 지식경제위원장의 대안(2011년 6월 30일 개정법률)

2011년 6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안을 통합하여 지식경제위원장은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다. 즉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및 2011년 2월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

회대안으로 통합하였다. 그 입법이유로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산업기술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산업기술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현행 법령에서 지정·고시·공고·인증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범위를 확대하였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둘째,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에 집중하도록 그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였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7조).

셋째,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의2 신설).

넷째,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이 대표발의안은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과 달리 제14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5조제2항).

IV. 시사점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 당시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사전적 보호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부의 행정규제(과태료 처분)와 형사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형사벌에서 낮은 형량에 대한 우려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기반이 부족하고 이를 보강하는 것이 향후의 입법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정부의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노력으로 형사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기술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제 2 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I. 산업기술

1. 현황과 문제점

2011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개정에서 산업기술의 개념을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그 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다. 즉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⑦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하는 기술]

기술 종류	근거법률	기술의 정의	소관
첨단 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며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술	지식경제부

기술종류	근거법률	기술의 정의	소관
고도기술	조세특례법 제18조제2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기획재정부
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지식경제부
신기술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	관련 중앙행정기관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및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기술	환경부

이와 같은 산업기술의 개념은 종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대상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등을 한 기술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지정 등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입법 목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사전예방과 유출방지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산업기술의 개념정의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한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다면, 현재와 같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 등을 한 기술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하튼 여기서는 산업기술의 개념을 현행처럼 규정하는 것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제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u>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u>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u>을 말한다.</p> <p>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u>첨단기술</u></p> <p>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u>고도기술</u></p>	<p>제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u>지식경제부장관이</u>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u>고시하는 기술</u>을 말한다.</p> <p>가. ~ 라. <삭제></p>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p> <p>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p> <p>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p> <p>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p> <p>사.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p>	

II. 전문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2011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보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여 보호위원회의 경직성 극복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중복성과 전문성 강화는 개선되지 않았다. 즉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따라서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위원회의 심의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조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 개선방안

이와 같이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중복성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을 심의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전문위원회를 설립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제 7 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p> <p>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u>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전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u>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p> <p>1. ~ 3. <생략></p> <p>⑥ <생략></p>	<p>제 7 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u>실무위원회 소속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u>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p> <p>1. ~ 3. <좌동></p> <p>⑥ <좌동></p>

Ⅲ. 산업보안인증 및 자격제도

1. 현황과 문제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에 관련하여 보호지침의 제정 등(제8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제12조), 개선권고(제13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4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4조의2),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제15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각종의 규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법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산업기술의 보안을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리체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여 시장에서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기술의 보호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실효성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당시 산업기술의 보호수단으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¹¹⁾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¹²⁾를 두

11)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안 제16조(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① 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하 “산업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산업보안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연구과제 수행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산업보안인증의 업무절차·유효기간·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 제20조(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① 산업자원부장관

고 있었으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및 ‘정보보안관리사 자격제도’와 중복될 우려 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과 자격제도는 순수한 정보보안에 한정되고 IT보안은 산업보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산업보안은 IT보안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인적 보안, 물적 보안을 포함한다.

(1)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산업기술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자율적으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업기술보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가진 자를 양성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자격증소지자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 자격증제도는 정보보안관리사제도와는 차이가 있고,¹³⁾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산업보안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보안관리사란 기업·연구소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등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말한다.¹⁴⁾

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실시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과목 그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13) 정보보안관리사 자격제도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정보보호에 한정하여 주로 기술적 차원의 보안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안에 있어서는 이들 자격제도를 가진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산업기술의 보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된 산업기술의 유출은 실무적인 경험을 가진 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요구되며, 아울러 정보시스템 외에 물리적·인적 보안 그리고 수사기법·위험대처 능력 등 일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14) 미국은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민간자격으로 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CISA)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보안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자격·과목 그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신 설>	제18조의2(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① <u>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u>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과목 그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2)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다음으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여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산업기술의 보안을 유

공인정보시스템관리자(CISM)를 두고 있으며, 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자격은 1978년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약 44,000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미국의 산업보안협회(ASIS)는 산업보안관리사(CPP)제도를 활용, 보안교육, 지적재산권 보호, 핵심인력 관리, 보안시설·방문자 관리 등 물리적 보안과 위기관리 등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대상기관이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도의 채택 등은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기업의 선택)에 맡겨둘 수 있다.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연구과제 수행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산업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산업보안인증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하여 우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그 필요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신 설>	제15조의2(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① <u>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이하 “산업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u> ② <u>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산업보안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u> ③ <u>산업보안인증의 업무절차·유효기간·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IV. 산업기술 보호지원

1. 현황과 문제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기반에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제16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7조), 국제협력(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제22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23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6조제1항). 이 경우 협회는 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②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④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⑥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을 행하고(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6조제4항),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6조제5항).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사업자단체와 유사한 형태로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고, 이들 업무를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호지원체계의 마련이 문제된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업무로는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지원 등, 기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기구의 설치와 그 비용을 정부예산에서 충당하는 근거 마련이 문제된다. 이 경우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의 설립은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술지원 및 기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의 설치는 그 업무의 특성상 진흥원 형태의 공공법인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예산에서 충당하여 관련 업무의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¹⁵⁾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신 설>	제28조의2(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산

15) 2011년 박근혜의원 대표발의안 제16조에서는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폐지하는 형식으로(또는 대신하는 형식으로)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를 지식경제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업기술보호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V. 형사벌

1. 현황과 문제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형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명시적인 문구는 없지만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해당 형사처벌 조항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산업기술의 용어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산업기술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의 행위기준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경우 중과실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침해행위	형사벌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보한 자는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침해행위	형사벌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없이 유출 및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취득행위 또는 부정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개선방안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본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충실하기 위하여 제36조제1항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에 국가핵심기술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형량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죄로 대체된다.

〈예 시〉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제36조(벌칙) ① <u>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p>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② 국가핵심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p> <p><삭제></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VI.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8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을 1건도 한 사례가 없으며,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분쟁조정 실시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2. 개선방안

위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여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무국의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분쟁조정 사건이 다수 발생할 여지는 낮다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 내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률)	개선안(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 ⑤ (좌 동) ⑥ <u>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둔다.</u>

VII. 전직금지

1. 현황과 문제점

종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전현직의 임직원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시 민사책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계약상 전직금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약이 없다고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직금지를 인정하고 있지만 매우 짧은 기간(통상 2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⁶⁾

16) 대판 2003. 7. 16. [2002마4380]

2011년 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제14조의2에서 신설하였다. 즉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이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 개선방안

이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지청구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종래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항과 달리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체계화 차원에서 보면(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지원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금지청구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적절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을 법체계 및 주요 입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산업기술의 보호는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기술은 주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책임과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행정조치와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이들 법률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로 말미암아 적용상 중첩성과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체제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로 조성하는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 감정인에게 손해배상 감정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개념정의를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실판단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보안인증제도 및 산업보안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기술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기구(보호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내지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정보원, 산업스파이 사례연구, 2007.
- 계승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 산업재산권 23호, 2006.
- 김대중,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제2권제1호, 2012.
- 김동진, 퇴직근로자의 정보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 영업비밀분쟁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법, 법조협회, 법조 제60권 제6호 통권 제657호, 2011.
- 김연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법원 도서관 사법논집 46권, 2008.
- 김용섭,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 재산권 제32호, 2010.
- 김원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 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2011.
- 김창호,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8권 2호, 2011.
- 나종갑, 영업비밀보호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조협회, 법조 제58권 제5호, 2009.
- _____, 영업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기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 판례연구 22권 4호, 2009.
- 박광민·윤해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성균관법학 18권 1호, 2006.

참 고 문 헌

- 박상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 연구 제6권 제3호, 2011.
- 박준석,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14, 2009.
- 배상철,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23권, 2007.
- 백영준, 영업비밀보호법의적용상 한계, 산업재산권 23권, 2007.
- 상공회의소, 영업비밀 보호 사례집, 1996.
- 신승균 · 전삼현 · 류성열,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5권, 2011.
- 안병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 지적재산권 32권, 2009.
- 양승우, 영업비밀의 쟁점 및 효과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문집 30권 1호, 2006.
- 윤선희, 영업비밀 개설, 법경출판사, 1991.
- 이귀숙,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 미국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9권 2호, 2009.
- 이달휴,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통권 제32호, 2009.
- 이동희, 일본의 산업스파이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5권 1호, 2007.
- 이상정, 영업비밀의 보호, 인권과 정의, 1992.

- 이정덕·한형구,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미국과 독일 법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권 3호, 2007.
- 이훈동,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외법논집 35권 4호, 2011.
- 정차호·문선영,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사 21권 2호, 2009.
- 최상희, 경쟁질서금지에 대한 법적검토, 법학연구 37권, 2010.
-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5호, 2006.
-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1.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박영사, 2011.
- George Stephanov Georgiev, The Reformed CFIUS Regulatory Framework : Mediating Between Continued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25 Yale J. on Reg. 125, 130-31 (2008)
- The American Law Institute, First Restatement of Tor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34.
- _____, Restatement(third) on Unfair Competition,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93.
- 大矢息生, 知的所有權と營業秘密の保護: 企業防衛のノウハウ, 稅務經理協會, 1994.
- 山本庸辛, 不正競爭防止法, 發明協會, 2002.
- 深道辰雄, 營業秘密の保護とその要件, ジュリスト(990號), 1991. 11.

참 고 문 헌

尾崎英男, 米國特許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 知的所有權おめぐる損害賠償の實務(知的所有權おめぐる損害賠償の實務(NBL no.33)), 商事法務研究會, 1996.

千野直邦, 營業秘密の法的保護, 中央經濟社, 2002.

[부 록]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종개정 : 2012년(평성24년) 3월31일 법률 제12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강구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부정경쟁”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상품등 표시(사람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기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로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자기의 상품등 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양도나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고 한다) 또는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5.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행위
7.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보유자’라고 한다)로부터 그 영업비밀이 제시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행위
8.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전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9.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거나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가 개재하였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10. 영업상 사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영상 및 영상녹음의 시청 내지는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 내지는 프로그램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영상 혹은 영상녹음의 시청이나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이하 본 호에서 ‘영상의 시청등’이라 한다.)을 그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그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당해 장치를 조립한 기기 포함) 또는 당해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조합된 기기를 포함)을 기록한 기록매체나 기억한 기기를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당해 장치 또는 당해 프로그램이 당해 기능 이외의 기능을 병유하는 경우에 당해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영상의 시청등을 가능하게 할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행위에 한한다.)

11. 타인이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영상녹음의 시청 내지는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프로그램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제한수단으로 제한되고 있는 영상이나 영상녹음의 시청 내지는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프로그램의 기록(이하 본 호에서 ‘영상의 시청등’이라 한다.)을 당해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그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당해 장치를 조립한 기기를 포함) 혹은 당해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조합되는 것을 포함)을 기록한 기록매체 혹은 기억한 기기를 당해 특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당해 장치 또는 당해 프로그램이 당해 기능 이외의 기능을 병유하는 경우에 당해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영상의 시청등을 가능하게 할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행위에 한한다.)
1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등 표시(사람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기타 상품이나 역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

13. 상품, 역무, 그 광고 또는 거래에 사용하는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이나 그 역무의 질, 내용,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14.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15. ① 파리조약[상표법(소화34년, 법률 제127호)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파리조약을 말한다]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상당하는 권리로 제한한다. 이하 본 호에서 단지 ‘권리’라고 한다)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나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에 관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한 그 권리에 관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에 관한 역무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이 법률에서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상표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표장을 말한다.

- ④ 이 법률에서 “상표의 형태”라 함은 수요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시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 및 내부형상과 그 형상과 결합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
- ⑤ 이 법률에서 “모방하다”라 함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기초로 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⑦ 이 법률에서 “기술적 제한수단”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영상이나 영상녹음의 시청 내지는 프로그램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프로그램의 기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시청 등 기기(영상이나 영상녹음의 시청 내지는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영상녹음 또는 프로그램의 기록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동일)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영상, 영상녹음 또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이나 시청 등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는 영상, 영상녹음 또는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 ⑧ 이 법률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률에서 “도메인 명”이라 함은 인터넷에서 개개 전자계산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된 번호, 기호나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번호·기호 기타 부호나 이들의 조합을 말한다.
- ⑩ 이 법률에서 “물건”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금지청구권) ①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전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침해행위로 생기는 물건을 포함. 제5조제1항에서도 동일)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손해액의 추정등) ①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9호까지 또는 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동항 제4호에서 제9호까지 열거한 것 중 기술상 비밀(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이하 이 항에서 ‘피침해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도수량’이라고 한다)에 피침해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마다의 이익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피침해자의 당해 물건에 관한 판매 기타 행위를 행할 능력에 상응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피침해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는 그 이익액은 그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2호 또는 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한 행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자신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당해 침해에 관한 상품등 표시의 사용
2.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당해 침해에 관한 상품 형태의 사용
3.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당해 침해에 관한 영업비밀의 사용
4. 제2조제1항제1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당해 침해에 관한 도메인 명의 사용
5. 제2조제1항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당해 침해에 관한 상표의 사용

④ 전항의 규정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한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6조(구체적 태양의 명시 의무)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부정경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할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명히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서류의 제출 등) ①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전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당사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하다), 사용자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당해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정을 명할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당해 감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입증을 위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당해 사실의 성질상 지극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구두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사자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당해 소송 수행의 목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영업비밀에 관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신청시까지 당사자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동호에 규정된 증거의 조사나 공개 이외의 방법으로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거나 제출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또는 이미 조사 받았거나 또는 조사할 증거(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개된 서류나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개된 서면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

2. 전호의 영업비밀이 당해 소송 수행의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영업비밀에 의거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아야 할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3. 전항 각호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 대하여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소송기록을 보존하는 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전항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결여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한 재판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한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당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한 재판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된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평성 8년 법률 제109호) 제9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동항에 규정된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고 동시에 이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법원서기는 동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 있어 동일)에 대하여 그 청구 직후에 그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서기는 동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까지 사이(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날까지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 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허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13조(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 ①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서 심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법관의 전원일치로써 그 당사자등이 공개의 법정에서 당해 사항을 진술함으로써 당해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고, 동시에 당해 진술이 없는 경우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당해 사항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유무에 대한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미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술할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전항 후단의 서면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하여 당해 서면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항의 심문을 공개할 수 없는 때에는 공중을 퇴정시키기에 앞서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포하여야 한다. 당해 사항의 심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야 한다.

제14조(신용회복의 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 영업상의 신용을 훼손당한 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그 자의 영업상 신용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소멸시효)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보유자가 그 사실 및 그 행위를 한 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행위 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16조(외국 국기등의 상업상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 국기 또는 국가의 문장 기타 기장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외국국기등’이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국기등유사기장’이라 한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외국국기등유사기장을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국기등유사기장을 상표로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국기등의 사용 허가(허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누구든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외국의 국가 문장(이하 ‘외국문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외국문장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문장을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문장의 사용허가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외국정부등기호’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정부등유사기호’라고 한다)을 그 외국정부등기호가 사용된 상품 또는 역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의 상표로 사용하거나 외국정부등유사기호를 당해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정부등유사기호를 당해 상표로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정부등기호의 사용 허가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제기관 표장의 상업상 사용금지) 누구든지 그 국제기관(정부는 국제기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국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과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국제기관유사표장’이라고 한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국제기관유사표장을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국제기관유사표장을 상표로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국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국공무원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 공여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공무원등에 대하여 국제적 상거래에 관한 영업상 부정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것(작위 및 부작위)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 공무원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도록 알선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이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서 ‘외국공무원등’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2. 공공이익에 관한 특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별법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1 또는 2 이상의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금액의 총액 중 50%를 초과하는 당해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액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원(대표이사, 감사역,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이나 이들 이외의 자로 사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지명한 사업자로서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특히 권익을 부여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제기관(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나 국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19조(적용제외등) ① 제3조 내지 제15조, 제21조(제2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정경쟁 구분에 따르고 당해 각 호에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13호 및 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상품 또는 영업의 보통명칭(포도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물건의 원산지 명칭으로 보통명칭으로 된 것을 제외)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내지는 영업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품등 표시(이하 ‘보통명칭등’이라 한다)를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 또는 표시하거나 보통명칭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 또는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동항 제13호 및 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보통명칭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5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부정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동일)없이 사용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없이 사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타인의 상품등 표시가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상품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그 상품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4.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타인의 상품등 표시가 저명하게 되기 전부터 그 상품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그 상품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5.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일본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나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나.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상품을 양수한 자(그 양수시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에 한정한다)가 그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나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6.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거래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그 취득시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공개행위인 사실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 또는 부정공개행위가 개재해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가 그 거래로 취득한 권원의 범위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열거한 부정경쟁 :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한 장치 또는 이들 호에 규정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나 기억한 기기를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②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한 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한 자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 록]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1. 전항제2호에 열거한 행위 :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상품을 직접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전항제3호에 열거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및 그 상품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그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직접 양도 및 인도 또는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0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등 행위(사람을 기망,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에의 침입, 부정액세스행위(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제4항에 규정하는 부정액세스행위를 말한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2. 사기등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3.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한 자
 - 가. 영업비밀기록매체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도화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영득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 기재 또는 기록이나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하여 그 복제를 작성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을 삭제하지 않거나 당해 기재 또는 기록을 삭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4.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하여 전호 가 내지 다목의 방법으로 영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5.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이사, 대표이사, 집행역,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또는 감사역이나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종업원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전호에 열거한 자를 제외한다.)
6.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인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배하여 그 영업비밀의 공개를 신청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제4호에 열거한 자를 제외한다.)

7.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전3호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목적을 가지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

2. 타인의 저명한 상품등 표시에 관한 신용 또는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당해 신용이나 명성을 해할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

3.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

4.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제한수단을 사용하는 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

5. 상품 또는 역무나 그 광고 내지는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역무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허위표시를 한 자(제1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6.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

7.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는 사기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가 있는 시점이나 보유자로부터 제시된 시점에 일본국내에서 관리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국외에서 이들 죄를 행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⑤ 제2항제6호의 죄는 일본국외에 있어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⑥ 제2항제7호(제18조제1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죄는 형법(명치 40년 법률 제45호)제3조의 예에 따른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을 허용한다.

제22조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 제1항제1호, 제2호나 제7호 또는 제2항에 열거된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3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 대하여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또는 제2항제6호의 죄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고소는 그 법인이나 사람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인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행한 고소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나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시효의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제 6 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제23조(영업비밀의 은닉결정(秘匿決定) 등) ① 법원은 제21조제1항의 죄 또는 전조 제1항(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 혹은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에게서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될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명백히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명백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미리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 혹은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기타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될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명백히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해당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가결하고 또한 해당 사항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지게 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고인 기타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결정(이하 ‘은닉결정(秘匿決定)’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은닉결정(秘匿決定)에 의해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될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명칭 기타 표현을 대체할 호칭 기타 표현을 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은닉결정(秘匿決定)을 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명백히 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 또는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312조의 규정에 의해 벌칙조문이 철회 혹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1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은닉결정(秘匿決定)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은닉결정(秘匿決定)에 관련된 전항의 결정(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은닉결정(秘匿決定)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91조제1항의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심문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은닉결정(秘匿決定)이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하는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과 관련된 때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② 형사소송법 제29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6조(공판기일 외의 증인심문 등) ① 법원은 은닉결정(秘匿決定)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혹은 번역인을 심문할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을 하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감정인, 통역인 혹은 번역인의 심문 혹은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혹은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과 관련하여 이를 공개 법정에서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해자, 피고인 기타의 자의 사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 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 법 제31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제158조제2항 및 제3항, 제 159조제1항, 제273조제2항, 제274조 및 제303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 정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3항, 제159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동법 제 158조제2항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동법 제273조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기일’ 로, 동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 규 정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일시 및 장소’로, 동법 제303조 중 ‘증인 기타의 자의 심문, 검증, 압수 및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 규정 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 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거서류’로 한다.

제27조(심문 등에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명의 제시명령) 법원은 호칭 등을 결정하거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문 혹은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취지를 정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 행할 심문 혹은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 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증거서류 낭독방법의 특례) 은닉결정(秘匿決定)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05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명백히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도록 한다.

제29조(공판전 정리절차 등에서의 결정) 다음의 사항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

1. 은닉결정(秘匿決定) 혹은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

제30조(증거개시 시의 영업비밀 은닉(秘匿)요청)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될 사항이 명백하게 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의거한 피해자, 피고인 기타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혹은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1관 제2목(동법 제316조의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거개시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록]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31조(대법원 규칙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에 제23조 내지 전조까지의 규정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